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46
----------	-----

2019년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7. 이호대 의원
2. 회부일자 : 2019. 2. 7
3.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2월 27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호대 의원)

1. 제안이유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의사자 85, 의상자 61, '19년 1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

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기념표석 설치 정도임.

- 현재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의사자 85, 의상자 61, '19년 1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기념표석 설치 정도임.

나. 주요내용

-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과 공연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호).
- 약칭과 알법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수정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본 개정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동물원, 서울식물원 등의 유료 공원과 서울시 소유의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가. 의사상자¹⁾ 지원사업(안 제4조제1호)

- 서울시는 2011년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는 의사자 유족, 의사상자, 의상자 가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의사자 기념표석을 지원해오고 있음.

1) -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
-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

※ 의사상자 지원 추진 실적(2019년 1월 기준)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실적 : 146명, 2,776,500천원 지급

연 도	의사자		의상자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년	1	30,000	-	-	1	30,000
2017년	2	60,000	3	8,500	5	68,500
2016년	4	120,000	2	3,500	6	123,500
2015년	5	150,000	1	10,000	6	160,000
2014년	35	1,050,000	20	44,750	55	1,094,750
2013년	38	1,140,000	35	159,750	73	1,299,750
계	85	2,550,000	61	226,500	146	2,776,500

※ '11년 市 지원조례 제정, '12년 조례개정 → 이전 의사상자에 소급지급

□ 의사자 기념표석 현황 : 14건

연 도	계	'97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8
인원	14	2	3	-	2	-	3	2	1	-	1	-
자치구	14	성동, 중구	중랑, 광진, 성북	-	송파 노원	-	영등포(2), 중랑	마포, 강남	서초	-	은평	-

- 조례 제정 당시 시 차원의 의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복지혜택이 미비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호를 신설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 ----- ---- 「법」 ----- -----

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u>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u> 감면	-----. 1. ----- - <u>공원 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공영주차장</u> -----
---	--

- 현재 시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와 공연 이용료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 추진하는 사안을 규정한 개정안 제4조제1호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확대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용료 등의 감면이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장하는 각 조례에 직접 감면 내용이 규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4조- 제8조)
- 안 제 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문구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는 바,
- 조례 제정 당시 제4조제1호의 신설 이유가 차원의 의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복지혜택이 미비하다는 취지였고 그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시가 설치·관리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을 반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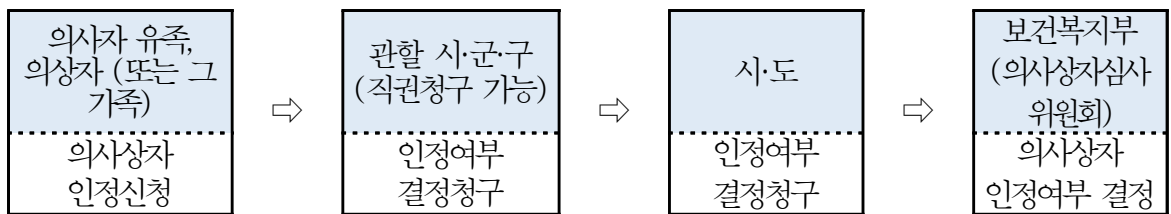
- 따라서 현재 의사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뿐만 아니라 공원 입장료, 공연 이용료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이용료 등의 감면이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장하는 각 조례에 직접 감면 내용이 규정화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 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문구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지급대상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 의사상자 인정절차(보건복지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포함) →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 관할 구청장 직권청구 가능 → 서울시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



- 지급방법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신청에 의거 신청인 계좌에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 현금 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

- 지급순위

· 의사자 : 유족(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 의상자 : 본인(사망시 의사자 유족 순위와 동일)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공동신청 :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 단독신청 : 특별위로금 포기서(붙임 2) 제출 후 신청인에게 전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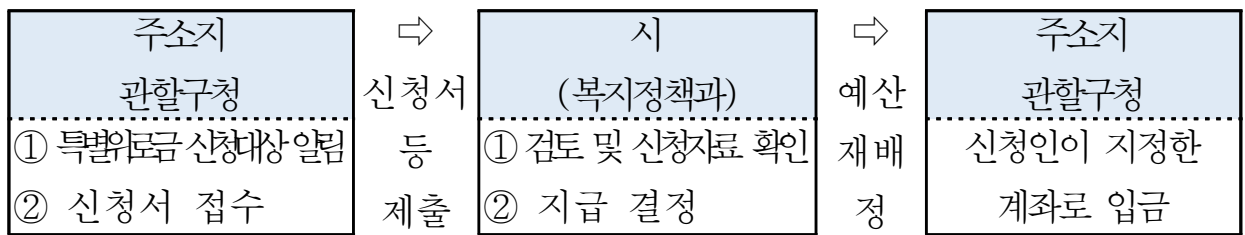
- 지급금액 : 의사자(3천만원), 의상자(1급 1,500만원 ~ 9급 50만원)

<의상자 등급별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단위: 천원)

부상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급액	15,000	12,500	10,000	7,500	5,000	3,000	1,000	750	500

- 지급절차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산출근거 : 30,000천원(의사자) × 4명 = 120,000천원

15,000천원(의상자 1급) × 2명 = 30,000천원

□ 의사자 기념표석 설치지원(조례 제4조)

- 설치대상 :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기념표석 설치 요구시

- 설치장소 : 의행이 일어났던 사고 장소에 설치 원칙

·사고현장이 도로·하천 등으로써 현장여건(교통장애, 미관저해 등)상

표석설치가 어려운 경우, 의행장소 인근 적정장소를 물색 후 설치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찬성 8명, 반대 0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6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7일

발 의 자 : 이호대, 이태성, 권영희, 이광호,
유 용, 김화숙, 김제리, 이현찬,
이정인, 이준형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의사자 85, 의상자 61, '19년 1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기념포석 설치 정도임.
- 이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동물원, 서울식물원 등의 유료 공원과 서울시 소유의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과 공연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호).
- 나. 약칭과 알법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수정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영주차장”을 “공원 입장료, 공연장 이용료,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을 “「법」”으로, “상당한”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제7조 중 “법”을 “「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별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제7조(지원신청) 별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으로 인정된 사람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

2. ----- 「별」-----

-----.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별」-----

-----.

제8조(준용 등) ① -----

「별」-----.

② (현행과 같음)

다. 비용추계 전제

- 2019년 1월 현재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의사자 85, 의상자 61)이므로 향후 인원 증감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 의사자 유족은 선순위자가 모두 배우자이고, 그 자녀들은 2명으로 가정
 -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모두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닌 활동보조자 1명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정
 -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는 3명이며, 의상자와 별도로 서울동물원과 서울식물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배우자 및 자녀가 서울동물원과 서울식물원의 연간 이용 횟수는 각 6회로 가정
- 서울동물원 입장료는 어른기준 5,000원(2019.1월), 서울식물원 입장료는 어른 기준 5,000원(입장료 징수안 5,000원 ~ 10,000원, 2019. 5월 징수 예정)으로 하고 향후 금액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

라. 비용추계 산식

- 서울동물원 입장료 면제액 ≙ 16,800천원
 - 의사자 유족(85명×3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7,650천원
 - 의상자 수(61명×2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3,660천원
 - 의상자가족(61명×3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5,490천원
- 서울식물원 입장료 면제액 ≙ 16,800천원
 - 의사자 유족(85명×3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7,650천원
 - 의상자 수(61명×2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3,660천원
 - 의상자가족(61명×3명)×이용횟수(연 6회)×입장료(5,000원)=5,49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4

e-mail : liz1998@seoul.go.kr